

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4의4] <신설 2023. 12. 29.>

[시행일: 2025. 1. 1.] 통합관리사업자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
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(제25조의3제1항 관련)

1. 통합환경일반관리자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 가. 대기환경기사 및 수질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
- 나. 대기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4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
- 다. 대기환경산업기사 및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환경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
- 라.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7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

2. 통합환경총괄관리자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 가.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「기술사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환경 부문(대기관리, 수질관리, 소음·진동, 폐기물처리, 자연환경관리 또는 토양환경)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
- 나. 대기환경기사 및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환경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
- 다. 대기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7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
- 라. 대기환경산업기사 및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환경 관련 업무에 9년 이상 종사한 사람